

가족회사협의회 운영 규정

□ 제정 : 2019. 11. 29

제1조(설치)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 설치된 학과와 산업체간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학과별 가족회사 협의회와 분과별 가족회사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(구성) ① 협의회는 학과교원 및 산업체 인사로 구성 운영한다.

② 협의회 의 위원장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.

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명에 의해 결정한다.

제3조(임기)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협약서) 협의회를 추진하는 학과는 대상기업과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능)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② 현장실습 및 현장견학과 관련된 사항

③ 교육과정개발과 관련된 사항

④ 산업체인사 초청 특강 및 멘토링 참여 등 학생교육 참여와 관련된 사항

⑤ 취업과 관련된 사항

⑥ 재직자 기술향상교육과 관련된 사항

⑦ 산업체 기술지도 및 산학공동연구와 관련된 사항

⑧ 장비공동활용과 관련된 사항

⑨ 장학금, 기자재 기증 등과 관련된 사항

⑩ 기타 산학협력과 관련된 사항

제6조(회의) ① 협의회에서는 매년 초에 산학협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당해의 사업 계획을 세운 후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.

②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협의회를 소집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